

<접착 및 계면> 편집위원회 규정

제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「접착및계면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칭함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 조 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편집부위원장 1명
3. 편집위원 20명 내외

제3 조 (위원 위촉)

1. 위원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.
2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.

제4 조 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 조 (사업)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.

1. 정기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
2.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
3. (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)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

제6 조 (학술지 발행시기) 연 4회(3,6,9,12월) 발행하며,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30일로 정한다.

제7 조 (관리)

1. 본 위원회의 신속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.
2.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제8 조 (회계)

1.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.
2.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.
3.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